



타협적제의지원은 조세국에어떻게요청해야합니까?

프로그램요약

조세국의타협적제의프로그램(Tax Department's Offer in Compromise Program)은상당한금액의세금부채액이있는납세자들이감면된금액을지불하여채무를해결할수있도록해줍니다. 개인과사업체모두에게자격이주어집니다.

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진행됩니다.

- 납세자가조세국에게납세자의현재정상태, 세금부채및해당액수에대한지불이불가능한이유를자세히설명한서류를제공합니다.
- 납세자는이러한정보에근거하여세금부채를감면받기위해납부가능한타협액수를제시합니다. 이러한타협액수를제시할때금액을동시에납부할필요는없습니다.
- 조세국(Tax Department) 직원은납세자의제의를검토할때납세자의나이, 고용상태및건강상태등을포함한기타요소도고려할것입니다.
- 조세국직원이타협액수를수락할경우조세국은세금부채액을합의된금액으로조정할것입니다.

타협적제의프로그램은특정상황에만적용되며모든납세자에게자격이주어지는것은아닙니다. 타협적제의자격이없는경우조세국이제공하는기타프로그램을확인해주시요. 예를들어지불플랜은여러번에나누어세금부채를갚아나갈수있는쉽고저렴한방법입니다.

어떤방식을선택하건간에세금부채를무시해서는안됩니다. 감당할수없는액수의세금고지서또는징수통지서를조세국에서받았을경우즉시해당기관에연락을취하는것이납세자에게가장최선이되는방법입니다. 조세국은해당케이스를검토하여해결책을찾을수있도록협조할것이기때문입니다.

본프로그램에대한자격이있는지어떻게알수있습니까?

타협적제의프로그램에대한자격을가지려면다음과같은조건중하나이상을충족해야합니다.

- 납세자가지급불능상태인경우(부채액이자산액보다큰경우)
- 파산으로부터최근 면책된경우
- 세금부채총액을납부할경우 *부당한경제적곤란*, 즉기본적생활비납부불가능을초래하는경우. *기본적생활비*란납세자와납세자가족의수입창출, 건강및복지을위한비용을말합니다. 개인납세자들만이부당한경제적곤란을이유로구제를요청할수있습니다.

본프로그램에어떻게지원해야합니까?

1. 정확한해당양식을작성해주십시오.

최종및고정:세금부채액이최종및고정액인경우에는양식 **DTF-4.1, Offer in Compromise For Fixed and Final Liabilities**(최종및고정부채에대한타협적제의)를사용하십시오.

정식항소미결: 부채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정식항소 권한이 있는 경우 양식 **DTF-4, Offer in Compromise For Liabilities Not Fixed and Final and Subject to Administrative Review** (부채가 최종 및 고정 이 아니고 행정 검토 대상인 경우에 대한 타협적 제의) 를 사용하십시오.

2. 모든 관련 서류를 포함시킵니다. 사용하는 양식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첨부하십시오.

- 양식 **DTF-5, Statement of Financial Condition and Other Information** (재정 상태 표 및 기타 정보)
- 지난 3 년간 연방 정부 세금 보고서
- 지난 30 일 내에 발행된 신용 평가 리포트
- 지난 12 개월 동안의 은행 계좌 내역서

경제 곤란 구제를 요청할 경우,

초래되는 부당한 경제적 곤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 서류와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3.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NYS TAX DEPARTMENT
CED OFFER IN COMPROMISE UNIT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5100**